

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73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6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,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5년 결산에 따라 「예치금」 이 당초 2,230백만원에서 7,292백만원으로 5,061백만원 증가하여, 2026 회계연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 또한 5,061백만원 증가하였음
 - 증가사유 : ‘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’ 집행잔액(3,449백만원),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(1,626백만원), 기본경비 집행잔액(6백만원) ※ 이자수입 감소(20백만원)

[2026년 수입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장·관·항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4,202	9,263	5,061	120.5
세 외 수 입	168	168	-	-
경 상 적 세 외 수 입	168	168	-	-
이 자 수 입	168	168	-	-
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	4,033	9,095	5,061	125.5
보 전 수 입 등	3,553	8,615	5,061	142.4
용 자 금 원 금 수 입	1,323	1,323	-	-
예 치 금 회 수	2,230	7,292	5,061	226.9
내 부 거 래	480	480	-	-
예 탁 금 이 자 수 입	480	480	-	-

[2026년 지출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4,202	9,263	5,061	120.5
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	3,380	3,380	-	-
장 애 인 단 체 및 사 업 지 원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3,380	3,380	-	-
장 애 인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	2,720	2,720	-	-
최 중 증 발 달 장 애 인 통 합 돌 보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	460	460	-	-
장 애 인 공 동 생 활 가 정 전 세 보 증 금 지 원 사 업	200	200	-	-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807	5,868	5,061	627.5
보 전 지 출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807	5,868	5,061	627.5
여 유 자 금 예 치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807	5,868	5,061	627.5
기 타	15	15	-	-
행 정 운 영 경 비 (복 지 정 책 실 장 애 인 복 지 정 책 과)	15	15	-	-
기 금 관 리 비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15	15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김은주 (☎ 2133-7447)

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373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년 5월 2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6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, 2026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5년 결산에 따라 「예치금」 이 당초 2,230백만원에서 7,292백만원으로 5,061백만원 증가하여, 2026 회계연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 또한 5,061백만원 증가하였음
 - 증가사유 : ‘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’ 집행잔액(3,449백만원),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(1,626백만원), 기본경비 집행잔액(6백만원) ※ 이자수입 감소(20백만원)

[2026년 수입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장·관·항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4,202	9,263	5,061	120.5
세 외 수 입	168	168	-	-
경 상 적 세 외 수 입	168	168	-	-
이 자 수 입	168	168	-	-
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	4,033	9,095	5,061	125.5
보 전 수 입 등	3,553	8,615	5,061	142.4
용 자 금 원 금 수 입	1,323	1,323	-	-
예 치 금 회 수	2,230	7,292	5,061	226.9
내 부 거 래	480	480	-	-
예 탁 금 이 자 수 입	480	480	-	-

[2026년 지출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4,202	9,263	5,061	120.5
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	3,380	3,380	-	-
장 애 인 단 체 및 사 업 지 원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3,380	3,380	-	-
장 애 인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	2,720	2,720	-	-
최 중 증 발 달 장 애 인 통 합 돌 보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	460	460	-	-
장 애 인 공 동 생 활 가 정 전 세 보 증 금 지 원 사 업	200	200	-	-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807	5,868	5,061	627.5
보 전 지 출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807	5,868	5,061	627.5
여 유 자 금 예 치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807	5,868	5,061	627.5
기 타	15	15	-	-
행 정 운 영 경 비 (복 지 정 책 실 장 애 인 복 지 정 책 과)	15	15	-	-
기 금 관 리 비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15	15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복지실 장애인복지과 김은주 (☎ 2133-7447)